성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 안 자 : 전수곤 의원 외 6인
2. 개정이유
 가. 심의회 위원의 위촉과 관련하여 지방의회 의장 개인의 자격으로 위원 일부를 추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법제처의 지적에 따라 정비하고, 심의회의 위원 임명 또는 위촉 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변경
 나. 장애등급제 폐지로「공무원연금법 시행령」개정(장애의 기준 삭제)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으로 적용 법령을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정비
 - 유족의 정의 변경(안 제2조제1항제3호) : 손자녀, 조부모 포함
 - 장애의 기준 해당 법령 변경(안 제5조제1항)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개정(장애의 기준 삭제)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에 따른 기준으로 변경
 나. 보상금 지급기준 구체화(안 제4조)
 - “도의원 의정활동비” → “경상북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다. 심의회 위원 임명 또는 위촉대상 정비(안 제9조)
 - “의장” → “성주군의회 의원”으로 추천 대상 정비
 라. 위원의 임기 변경(안 제11조)
 - “연임할 수 있다.” →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공무원 재해보상법
 ○ 기　　타 : 조례안예고(2019. 8. 26 ~ 2019. 8. 30)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등급제 폐지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으로 적용법령을 변경하고, 심의회의 위원 임명 또는 위촉 대상 공무원을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 법리 검토결과,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성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과 기준 등을 구체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